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시 보

www.namwon.go.kr

선 람	기관장

제 121 호 2014. 12. 26(금)

고 시

○남원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및지형도면승인고시.....1

공 고

○남원시금연지도원운영에관한조례제정계획입법예고공고.....3

○압류자동차공매통지서반송분공시송달공고의뢰공고.....16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※ 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9

남원시 고시 제2014 - 108호

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

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변경)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 관련도서를 남원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남 원 시 장
2014년 12월 26일

1. 남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 (㎡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10	남원 월락동 양우내안애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남원시 월락동 산8번지 일원	20,157	증) 1,582	21,739	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구역명	결정내용	결정사유
10	남원 월락동 양우내안애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변경 :당초 20,170㎡ →변경 21,739(증1,582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절개지 안정화를 위한 옹벽높이 조절에 따른 법면용지 추가

나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- 1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
- 2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구번호	획지번호	획지				비고
		위치	면적			
			기정	변경	변경후	
I	I-1	남원시 월락동 산8	10,661.0		18,099	공동주택용지
	I-2	남원시 월락동 157-5	2,058		2,058	도로용지
	I-3	남원시 월락동 산12	-	증)1,582	1,582	녹지용지
합계			20,157	증)1,582	21,739	

- 4)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
- 5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
- 6) 경미한 변경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(변경없음)

2. 남원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가.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	학교	고등학교 (남원정보국악고교)	월락동 159	30,837	감) 1,176	29,661	전북도고시 제58호 (80.4.29.)	
변경	4	학교	고등학교 (남원서진여고교)	월락동 173	21,469	감) 406	21,063	전북도고시 제140호 (83.7.26.)	

나.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	학교	■ 면적변경 -기정 : 30,837m ² -변경 : 29,661m ² (감 1,176m ²)	· 양우내안애아파트 신축에 따른 경계부 법면 및 옹벽부 재해예방 및 안정화부지 활용을 위한 면적 제척
4	학교	■ 면적변경 -기정 : 21,469m ² -변경 : 21,063m ² (감 406m ²)	· 양우내안애아파트 신축에 따른 경계부 법면 및 옹벽부 재해예방 및 안정화부지 활용을 위한 면적 제척

3.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 및 지형도면승인도 : 실음생략

남원시 보건소 공고 제 2014 - 28호

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12월 26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를 규정함.(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)

나. 금연지도원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를 규정함(안 제6조)

다.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를 규정(안 제7조 및 제8조)

3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(참조 : 보건소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이유)

○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.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할 곳 : 우 590-040/남원시 요천로 1285번지(조산동)/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631-5933), 직접방문,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

라.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(063-620-795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4. 붙임 : 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입법예고 조례안 1부.

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: 2014. 12.

제 출 자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: 보 건 소 장

1. 제정이유

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를 규정함.(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)
- 나.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를 규정함(안 제6조)
- 다.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를 규정(안 제7조 및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4. 12. 26. ~ 2015. 01. 15.(20일간)

- 결 과 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평가 : 검토의견 수용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제3조(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) ① 「국민건강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(3 × 4센티미터) 사진 2매
2.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,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
3.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(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」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)

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시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, 신청서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

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금연지도원증(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
2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(3 × 4센티미터) 사진 1매
3.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) 1부

제4조(금연지도원의 임기)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5조(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)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(영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)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,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)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안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라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금연지도증과 승인서를 내보여야 한다.

제7조(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시간당 1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하되, 1일 최대 4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, 새벽,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(실적보고 등)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금연지도원 신청서(제3조제1항관련)

신청인	성 명 (한 자)		사진 (3cm×4cm)
	생년월일		
	주소(전화번호)		

자격요건 및 신청사유(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)

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16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: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(서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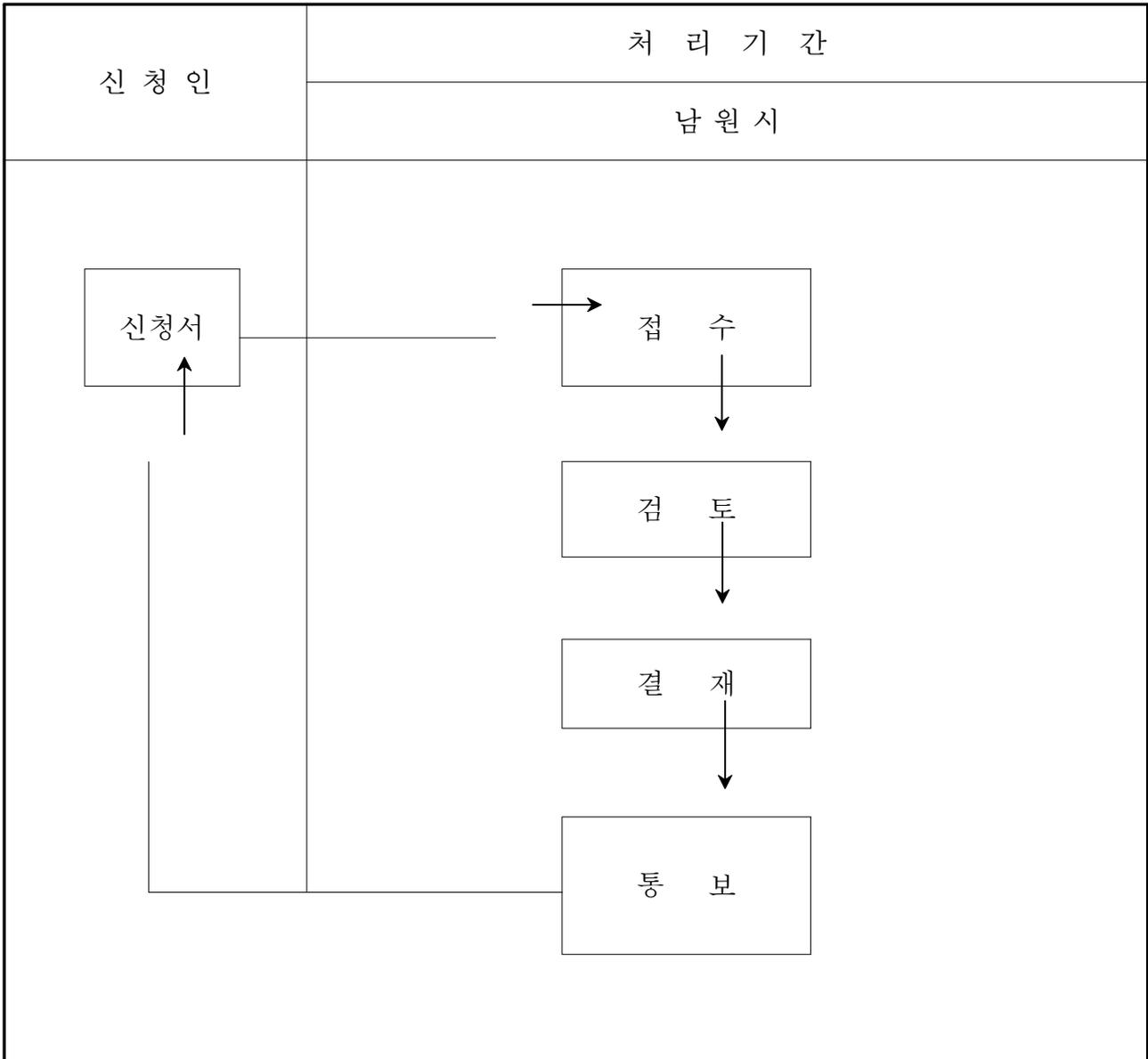
남 원 시 장 귀하

첨부물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(3 × 4센티미터) 사진 2매 2.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,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.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(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)
-----	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쪽)



[별지 제2호서식]

금연지도원 추천서(제3조제1항관련)

신청인	성 명 (한 자)		사진 (3cm×4cm)
	생년월일		
	주소(전화번호)		

자격요건 및 추천사유(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)

위 사람을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,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추천기관장: (서명 또는 인)

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: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,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서약자 (서명 또는 인)

남 원 시 장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[별지 제4호서식] (제3조제3항 관련)

제 20 - 호

위 축 장
금 연 지 도 원

소 속:

성 명: (한 자)

생 년 월 일:

위 축 기 간:

위 사람을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남 원 시 장

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[별지 제5호서식] (제3조제3항 관련)

(앞 쪽)

제 호

금연지도원증

사 진
3cm×4cm
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
뒤 그림 없이 6개월
이내에 촬영한 것)

성 명

남 원 시 장

60mm×90mm

(색상 : 연파랑)

(뒤 쪽)

소 속:

성 명:

생년월일(성별): ()

위 사람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남 원 시 장 직인

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
2. 법에서 정하는 감사·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
3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

☎ 전화번호 : 000-000-0000

주) 지질은 보존용지(1종) 120g/m² or 플라스틱

[별지 제6호서식]

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(제3조제5항 관련)

신청인	성 명 (한 자)		사진 (3cm×4cm)
	생년월일		
	주소(전화번호)		

재발급 신청사유

위 본인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「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」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남 원 시 장 귀 하

- 첨부물
1. 금연지도원증(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
 2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(3 × 4센티미터) 사진 2매
 3.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) 1부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[별지 제7호서식](제6조제3항 관련)

단독 직무수행 승인서

금연 지도원	① 소속(단체명)		② 성 명	
	③ 생년월일		④ 전화번호	
	⑤ 주 소			
⑥ 출입 기간		년 월 일 부터	년 월 일 까지	
⑦ 출입 장소				
⑧ 직무수행범위				

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5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 및 「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」 제6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.

년 월 일

남 원 시 장 직인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전라북도 남원시 공고 제 2014 - 1572호

공 시 송 달

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 『공매통지서』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위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4년 12월 26일

남 원 시 장

- 1. 서 류 의 명 칭 :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
- 2. 공 고 기 간 : 2014.12.26. ~ 2015.01.09
- 3. 공시송달 대상자 : 붙임 내역과 같음
- 4. 서 류 의 내 용
 -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기 위한 공매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
 -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

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,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● 문의처 :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(063-620-6288) ●

붙 임

공시송달 대상자 내역

성 명	주 소	사 유	자동차	비고
(주)선*	남원시 네마실3길	수취인불명	57보2849	
이*천	남원시 산곡길	이사감	01무5547	
김*원	남원시 용성로	이사감	22라8313	
박*훈	남원시 광한서로	수취인불명	21부4811	